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발 명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5년 정부R&D 연구노트 활용사업이 특허청에서 과기부로 이관되어, 「발명진흥법」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상의 연구노트 관련 규정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발명진흥법」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연구노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 개정안 (법률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은 2022. 12. 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후속으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문 삭제)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 4(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6조의 5(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및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 나. (별표 및 별지 삭제) [별표1] 연구노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 4(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를 삭제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 5(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를 삭제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를 삭제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1] 연구노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삭제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6조의4(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u>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u>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노트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u>	<삭 제>
1. <u>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갖추는 것</u>	<삭 제>
2. <u>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u>	<삭 제>
3. <u>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절차 및 처리 기준을 갖추는 것</u>	<삭 제>
② <u>연구노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u>	<삭 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노트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연구노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노트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연구
노트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야 한다.

<삭 제>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산장비, 전담
인력, 업무 절차 및 처리 기준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연구노트전문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6조의5(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삭 제>

-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연구
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②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을

<삭 제>

<u>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사업을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한다.</u>	
<u>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삭 제>
<u>1. 제6조의4에 따른 연구노트전문 기관의 지정요건 및 신청 절차 : 2015년 1월 1일</u>	<삭 제>
<u>2. 제6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연구노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 2015년 1월 1일</u>	<삭 제>
<u>[별표1] 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제6조의5제1항 관련)</u>	<삭 제>
<u>[별지 제2호서식]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신청서</u>	<삭 제>
<u>[별지 제3호서식]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서</u>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연 락 처	(042) 481 - 5964